

##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

### 장 성 군 의 회 의 장

#### 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# 2. 제안이유

-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
  - 행정자치위원회 : 환경위생과 신설 (안 제3조제2항제2호)
  - 산업건설위원회 : 환경위생과 삭제 (안 제3조제2항제3호)

#### 4. 관계법령

- 관계법령 : 「장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」

#### 5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9. 4. 24. ~ 2019. 4. 28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향)

## 6. 조례안 : 붙임

## 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8일 18:00(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 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  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  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##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행정자치위원회

기획감사담당관, 행정복지국 소관과(총무과, 주민복지과, 환경위생과, 문화관광과, 민원봉사과, 재무과), 보건소, 문화시설사업소,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산업건설위원회

미래디자인담당관, 경제건설국 소관과(안전건설과, 일자리경제과, 교통정책과, 산림편백과, 도시재생과), 농업기술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**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4명
2. 행정자치위원회 6명
3. 산업건설위원회 6명

**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**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
  - 다.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
2. 행정자치위원회
  - 가. 기획감사담당관, 행정복지국 소관과(총무과, 주민복지과, 환경위생과, 문화관광과, 민원봉사과, 재무과), 보건소, 문화시설사업소,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
3. 산업건설위원회
  - 가. 미래디자인담당관, 경제건설국 소관과(안전건설과, 일자리경제과, 교통정책과, 산림편백과, 도시재생과), 농업기술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

**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)** ①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**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**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상임위원장)**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, 임기 중에 의장·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특별위원회)**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.

**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,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의 선임)**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인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**제10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**제11조(간사)**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12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13조(전문위원)** ①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 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장성군의회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 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, 행정복지국 소관 과(총무과, <u>주민복지과, 문화관광 과, 민원봉사과, 재무과</u>), 보건소, 문화시설사업소, 평생교육센터 소 관에 관한 사항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디자인담당관, 경제건설국 소 관과(안전건설과, 일자리경제과, <u>교통 정책과, 환경위생과, 산림편백과,</u> 도시재생과), 농업기술센터,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 ----- --- <u>주민복지과, 환경위생과, 문 화관광과,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<u>교통정책과, 산림편백과</u>----- ----- -----</p>